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2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2029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23861 판결

변 론 종 결 2020. 8. 21.

판 결 선 고 2020. 9.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2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2,640,770원(과세번호 B), 취득세 154,026,880원(과세번호 C)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7. 31. [redacted]공사로부터 [redacted] [redacted]군 D 공장용지 11,63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은 후 그 지상에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 5. 10.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제2호의 감면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1. 29. [redacted]관리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위 공사에 매도하되 위 공사로부터 5년간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며, 위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우선매수권(환매권)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1. 30.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위 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8. 12. 28.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면제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2

취득세 132,400,110원, 지방교육세 13,240,010원, 농어촌특별세 6,620,000원 합계 152,260,120원을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면제된 취득세 136,139,190원, 지방교육세 7,779,380원, 농어촌특별세 9,724,220원 합계 153,642,790원을 각 신고하였으나(을 제2호증, 갑 제8호증), 납부기한인 2018. 12. 31.이 지나도록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그 후 피고는 2019. 1. 10.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19. 1.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152,260,120원(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이하 같다)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80,650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153,642,790원(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이하 같다)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84,090원 합계 306,667,650원(= 152,260,120원 + 380,650원 + 153,642,790원 + 384,09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한다)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징수유예 요청에 따라 2019. 1. 31.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19. 7. 31.까지로 연장하는 징수유예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유예된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위 취득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 8. 7. 원고에게 2019. 8. 23.까지 이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장(갑 제1호증)을 송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redacted]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redacted]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관리공사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시행하는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ale and lease-back program)'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위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는 원고가 위 공사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우선 양도하되, 위 공사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고 그 임대기간 중에 환매권 행사를 통해 소유권을 원래대로 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2

복할 수 있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와 동일한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정해진 환매권을 상실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redacted]관리공사에 확정적으로 귀속된 때라야 비로소 이를 위 공사에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단지 위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위 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이를 위 공사에 매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redacted]관리공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위 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도 위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2018. 12. 15. 원고에게 취득세 152,640,770원(과세번호 B), 취득세 154,026,880원(과세번호 C)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무효확인을 구하는 '2018. 12. 15.자 각 취득세 부과처분'은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원고의 청구를 이 사건 고지(2019. 1. 10.자)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해당할 뿐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2018. 12. 15.자 각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8. 12. 15. 원고에게 각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2

전제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일자에 원고 주장과 같은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일자 역시 '2019. 8. 7.'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고지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 판단

원고의 청구가 2019. 1. 10.자 이 사건 고지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선해할 경우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지 중 취득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제1심판결의 결론이 타당하고, 가산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제1심판결이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결국 제1심판결의 결론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1) 취득세의 납세의무와 과세관청의 납세고지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세액 신고에 따라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세에 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과세관청의 취득세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참조).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2

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고지의 법적 성격

피고가 2019. 1. 10. 이 사건 고지를 통하여 원고에게 자진 신고에 의해 이미 확정된 취득세의 이행을 명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고지는 ① 신고로 확정된 취득세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② 그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 볼 수 있다.

3) 취득세 부분

이 사건 고지 중 취득세 부분은 피고가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하여 단순히 원고에게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4) 가산세 부분

이 사건 고지 중 가산세 부분은, 그 가산세의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이 혼합된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2

고가 2018.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정해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달리 이 사건 고지 중 위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부분에 법령위반 등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것이 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가산세 부분에 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어 오히려 원고의 해당 부분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2

별지

관계 법령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불성실 · 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2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끝)